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

제출년월일 : 1998. 11.
제 안 자 :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97. 3. 7)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97. 8.11),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97. 9.18)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상위법규에 부합되게 전문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와 부합되게 전문개정.

나.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부과기준 개정 (안 제5조, 제6조)

구 분	오수처리시설 청소		분뇨 수집운반 (18ℓ당)
	기본(0.75㎥)	초과(0.1㎥)	
개정전	11,045원	772원	177원
개정후	14,840원	1,029원	198원

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일부 조정 (안 제7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환경부예규에 준용 (안 제8조)

3. 근거법규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라. 울산광역시 환미 67000 ~ 248('98. 2. 21)

마. 환경부예규 제167호('97. 12. 4)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6. 참고사항

가.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98. 9. 14 ~ 10. 4 까지 20일간 일간(신문)지에 입법예고 하고 개정조례안의 전문을 환경보호과와 민원봉사실,동사무소에 입법예고 기간동안 비치 공시한 결과 주민의견이 제시되어 붙임과 같이 검토 의견 처리 하였음.

나. 가축사육지역 의견검토 요지 : 따로붙임

다. 물가실무대책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결과서 : 따로붙임

□ 가축사육지역 의견검토 요지

○ 전부제한지역 (가축을 사육 못하는 지역)

의견제출자	현 행	의 견 제 시	의 견 검 토	반영여부
북정동장	. 북정동 전부제한 지역임	. 북정동 손골마을을 일부제한지역으로 조정바람.	. 북정동 손골마을은 복산1동 주거지역과 연접함으로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일부 제한지역으로 조정 할수 없음	미반영
성안동870-4 변정의	. 우정동 우회도로 (북부순환도로)북쪽 전부제한지역 임	. 우정동 우회도로(북부순환도로) 북쪽을 일부제한지역으로 조정 바람	. 환경오염예방차원에서 일부제한지역으로 조정 할수 없음	미반영
우정동장		. 우정동 우회도로(북부순환도로) 북쪽을 현조례인 전부제한 지역으로 고정 바람.	.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현조례인 전부 제한지역대로 둠	반 영

○ 일부제한지역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일부를 사육할수 있는 지역)

의견제출자	현 행	의 견 제 시	의 견 검 토	반영여부
북정동장	. 성안동 칠암마을은 일부제한지역임.	. 성안동 칠암마을을 삭제 요망	. 성안동 칠암마을은 구획정리지구 편입으로 삭제함.	반 영
성안동870-4 변정의 및 태화동장	. 유곡동 평동마을은 일부제한지역임	. 유곡동 평동마을을 전부제한지역으로 조정 바람	. 유곡동 평동마을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전부제한지역으로 조정함	반 영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관련영업자의 허가된 영업구역 범위안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수집운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의하여 다른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대행계약을 할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취소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 (분뇨의 처리) 구청장은 분뇨의 처리에 있어서는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 사정변경에 의하여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4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대행영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대상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후 즉시 징수 한다.

④ 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에게 대행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의한다.

제6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청소 요금)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소한 정화조청소업자는 별표2의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 (가축사육 제한지역등)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육 {1마리 이상의 사육(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은 별표3의 가축사육제한지역과 같다.

②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 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과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및 그와 관련된 가축

4. 애완용·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⑤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준용) 다음 각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을 준용 한다.

1.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2. 시행규칙 제11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

제9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행한 허가, 각종 신고 기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 과 기 준	수집·운반비	처 리 비
18ℓ 당	198원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 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수수료

비고 : 분뇨의 수집·운반비중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2]

오수처리시설 청소 요금기준

구 분	부과기준	청 소 료 (오니의 수집 운반비포함)	처 리 비
기본요금	0.75㎥	14,840원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 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처리수수료
초과요금	매 0.1㎥당	1,029원	〃

비고 : 오수처리시설청소요금의 청소료(오니의 수집·운반비포함)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3]

가 축 사 육 제 한 지 역

1. 전부제한지역

구 분	제 한 지 역 의 표 시 (법정동.자연부락.지역기준)
학성동	○학성동 전역
반구1동	○반구1동 전역
반구2동	○반구2동 전역
복산1동	○복산1동 전역
복산2동	○복산2동 전역
북정동	○북정동 전역
	○성안동 전역(풍암, 성동, 황암, 약사제외)
옥교동	○옥교, 학산동 전역
성남동	○성남동 전역
	○교동 전역(우회도로 북쪽제외)
우정동	○우정동 전역
태화동	○태화동 전역
	○유곡동 평동전역(원유곡, 길촌제외)
다운동	○다운동 전역(다전, 말미, 모래골제외)
병영1동	○남외동 전역
병영2동	○동, 서동 전역(장현동제외)
약사동	○약사동 전역(원약, 내약, 주연제외)

2. 일부제한지역

구 분	제 한 지 역 의 표 시 (법정동·자연부락.지역기준)
북정동	○풍암, 성동, 황암, 약사
성남동	○교동 우회도로 북쪽
태화동	○원유곡(길촌제외)
다운동	○다전, 말미, 모래골
병영2동	○장현동 전역
약사동	○원약, 내약, 주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1장(삭제)
제1장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 "분뇨", "축산폐수", "오수정화시설"등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2.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라 함은 1마리 이상의 사육(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삭제)**
제 2 장 분뇨의 처리	제2장(삭제)
제3조 (분뇨의 수집운반) ①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제2조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

현 행	개 정 안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이경우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구역은 울산광역시 중구 전역으로 한다. ③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제1항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령·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라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관련영업자의 허가된 영업구역 범위안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수집운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의하여 다른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대행계약을 할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법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취소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 (분뇨의 처리) 구청장은 분뇨의 처리에 있어서는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 사정변경에 의하여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4조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구청장은 법제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1항과, 법 제2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년1회이상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정화조등의 청소 이행명령 또는 통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화조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 영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대행영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대상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후 즉시 징수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이 도래할 때 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정화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투입하여야 한다. 3.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확보 투입하여야 한다. 4. 오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자는 오수정화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통지한 청소예정일 10일이전에 실시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5. 제4호에서 규정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	④ 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에게 대행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 (부적정 정화조등의 신고) 정화조등을 청소한자는 그 정화조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 또는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관리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청소 요금)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소한 정화조청소업자는 별표2의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가축사육제한	제3장(삭제)
제7조 (사육제한지역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1의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③별표2의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	제7조(가축사육 제한지역등)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육 {1마리이상의 사육(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은 별표3의 가축사육제한지역과 같다. ②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현 행	개 정 안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과 가축
4. 애완용·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및 그와 관련된 가축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4. 애완용·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⑤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 (허가절차등) ①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삭제)
②구청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가축사육허가를 받은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장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제4장(삭제)
제9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9조(삭제)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처	

현 행	개 정 안
리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제3조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 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대상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한다.	
제10조 (처리비 징수)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및 정화조오니(오수를 포함한다)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부숙탱크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제9조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처리비를 징수한다.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기타 구청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구청장은 처리장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처리장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를 매월 징수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장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삭제)
제12조 (포탈된 처리비의 과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를 과태료로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삭제)
제 5 장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등	제5장(삭제)
제13조 (분뇨관련 영업허가) ①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울산광역시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분뇨관련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정화조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률향상과 구민편의도모,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2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능력 적정등에 관한사항 3.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분뇨처리(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포함)에 수반하는 업무	제14조(삭제)
제 6 장 과태료 부과	제6장(삭제)
제1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함에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준용) 다음 각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1.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2. 시행규칙 제11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
제16조 (과태료 처분통지)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삭제)

현 행	개 정 안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은행납부인 경우에는 20)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8조(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삭제)**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삭제)**
제 7 장 보 칙	**제7장(삭제)**
제21조 (행정위탁) 인접한 구·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처리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다.	**제21조(삭제)**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별표 3]

수수료부과기준

○ 분뇨 수집 수수료

부과기준	계	수거료	처리비
18ℓ당	195원	177원	18원

○ 정화조 청소 수수료

구분	용량	계	청소료	처리비
기본요금	0.75m³	11,795원	11,045원	750원
초과요금	매 0.1m³당	872원	772원	100원

비고 : 1. 각시설별 수집·운반 및 청소한 양에 따라 징수한다.
2. 각 시설별로 계산한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 정 안

[별표 1]

(삭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수집·운반비	처리비
18ℓ당	198원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처리수수료

비고 : 분뇨의 수집·운반비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2]

오수처리시설 청소 요금기준

구분	부과기준	청소료(오니의 수집·운반비 포함)	처리비
기본요금	0.75m³	14,840원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처리수수료
초과요금	매 0.1m³당	1,029원	〃

비고 : 오수처리시설청소요금의 청소료(오니의 수집·운반비 포함)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3] 〈신.구조문대비표〉

가 축 사 육 제 한 지 역

1. 전부제한지역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제한지역의표시(동기준)	구 분	제한지역의표시(법정동, 자연부락, 지역기준)
학성동	학성동 전역	학성동	학성동 전역
반구1동	반구1동 전역	반구1동	반구1동 전역
반구2동	반구2동 전역	반구2동	반구2동 전역
복산1동	복산1동 전역	복산1동	복산1동 전역
복산2동	복산2동 전역	복산2동	복산2동 전역
북정동	북정동 전역	북정동	북정동 전역
	성안동전역(풍암, 칠암, 성동, 황암, 약사제외)		성안동 전역(풍암, 성동, 황암, 약사 제외)
옥교동	옥교, 학산동 전역	옥교동	옥교, 학산동 전역
성남동	성남동 전역	성남동	성남동 전역
	교 동 전역(우회도로 북쪽제외)		교 동 전역(우회도로 북쪽 제외)
우정동	우정동 전역	우정동	우정동 전역
태화동	태화동 전역	태화동	태화동 전역
			유곡동 평동전역(원유곡, 길촌제외)
다운동	다운동 전역(다전, 말미, 모래골 제외)	다운동	다운동 전역(다전, 말미, 모래골 제외)
병영1동	남외동 전역	병영1동	남외동 전역
병영2동	동, 서동 전역	병영2동	동, 서동 전역(장현동제외)
약사동	약사동 전역 (원약, 내약, 주연 제외)	약사동	약사동 전역(원약, 내약, 주연 제외)

2. 일부제한지역

현 행		개 정 안	
구분	제한지역의표시 (법정리, 동기준)	구분	제한지역의표시 (법정동, 자연부락, 지역기준)
북정동	풍암, 칠암, 성동, 황암, 약사	북정동	풍암, 성동, 황암, 약사
		성남동	교동 우회도로 북쪽
태화동	유곡동 전역(길촌제외)	태화동	원유곡 (길촌 제외)
다운동	다전, 말미, 모래골	다운동	다전, 말미, 모래골
병영2동	장현동 전역	병영2동	장현동 전역
약사동	원약, 내약, 주연	약사동	원약, 내약, 주연

"꿈과 미래의 큰 울산, 변화하는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우681-220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0-1번지/ 전화(052)290-0351전송559/ 담당자:아순희

문서번호 물위 98-22호
시행일자 1998. 6. 30. ( )
(경유)

받 음 환경보호과장
참 조

선결	과장		지시		
접수	일자시간	98. 6. 30 :	결재·공람	계장	
	번호	1122			
처리과	환경보호과				
담당자					

제 목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3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안) 심의건에 대한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개최일시 : '98. 6. 29(월) 14:00 ~ 15:00
2. 장 소 : 2층 상황실
3. 참 석 : 16명
4. 의안번호 : 98-1
5. 안 건 :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안) 심의
6. 심의결과 : 붙임 심의의결서 참조

붙 임 : 심의의결서 1부. 끝.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서

의안 번호	98-1	안건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안) 심의

주문사항

구 분	정화조청소				분뇨수집운반 (18ℓ당)		비 고
	기본 0.75m³		초과 0.1m³				
	수수료	인 상	수수료	인 상	수수료	인 상	
조정안	15,209	4,164 (37%)	1,062	290 (37%)	201	24 (13%)	처리비 제 외
현 행	11,045		772		177		

심의결과

(결과요지)

○ **참석의원 16명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조정(안) 원안 가결**

※ 근거 : 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8조3항

○ 수수료를 원안대로 가결하되 울산광역시의 타구와 요금의 적정선 조율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구 의회 의결시 타구와 같은 요금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

※ 위원별 심의 의결서 따로붙임

ㅁ 물가대책위원회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위원장	~~권나명~~ 곽홍기	울산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부위원장	정재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산업국장	
위 원	조용수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 원	
〃	최현태	〃	〃	
〃	이정욱	울산광역시중부경찰서	방범과장	
〃	이진해	동울산 세무서	총무과장	
〃	안희택	울산문화방송	총무부차장	
〃	이웅걸	울산상공회의소	조사부장	
〃	장병익	울산대학교	경제학교수	
〃	이동언	농협중앙회	경제상무	
〃	정두식	축산업협동조합	유통상무	
〃	이무일	수산업협동조합	지도상무	
〃	서성대	새마을운동울산중구지회	회 장	
〃	김혜자	울산YWCA	회 장	
〃	임순식	학성동154-2	물가모니터요원	
〃	최금자	유곡동 87-1	물가명예감시회장	
〃	김명한	한국음식업울산중구지부	지 부 장	
〃	손청준	휴게음식업울산지회	지 회 장	
〃	최정노	이용업중앙회울산중구지회	지 회 장	
〃	조순남	미용업중앙회울산중구지회	지 회 장	
간사	이종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경제과장	

"꿈과 미래의 큰 울산, 변화하는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우681-220/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0-1번지/전화(052)290-0351전송559/ 담당자:이순희

문서번호 물위 13600 - 3
시행일자 1998. 5. 9
(경유)

받 음 환경보호과장
참 조

선결	과장		치시		
접수	일자 시각	98. 5. 11	결재·공람	계장	
	번호	641			
처리과		환경보호과			
담당자					

제 목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안) 심의결과 통보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안)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심의 의결서 1부. 끝.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실무위원장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 의결서

□ 안　　건 :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

□ 조정요구안

구 분	정화조청소				분뇨수집운반 (18ℓ당)		비 고
	기본0.75㎥		초과0.1㎥당				
	수수료	인상	수수료	인상	수수료	인상	
조정안	15,209	4,164 (37%)	1,062	290 (37%)	201	24 (13%)	처리비 제 외
현 행	11,045		772		177		

□ 의결내용 :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재적위원 10명 중 10명 전원 조정요구안대로 찬성하여 원안 가결함

□ 심의방법

○ 소집심의 ('98. 4. 16) : 조정요구안 산정 설명을 보충하는 세부자료 추가 요구(각 위원) 및 서면심의 의결 합의

○ 서면심의('98. 4.[illegible] : 최종 의결

"꿈과 미래의 큰 울산, 변화하는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우681-220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0-1번지/ 전화(052)290-0351전송559/ 담당자:이순희

문서번호 중구 물위 98-1호
시행일자 1998. 4. 18. ( )
(경유)

받 음 중 구 청 장
참 조 환경보호과장

선결	과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98. 4. 18	결재·공람		
	번호	537			
처리과					
담당자	김상정				

제 목 :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3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안) 심의의 건에 대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개최일시 : '98. 4. 16(목) 14:00
2. 장 소 : 부구청장실
3. 참 석 : 10명
4. 의안번호 : 98-1
5. 안 건 :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안) 심의
6. 심의결과 : 붙임 심의의결서 참조

붙 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끝.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

심 의 의 결 서

안 건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안) 심의

주문사항

구 분	정화조청소				분뇨수집운반 (18ℓ당)		비 고
	기본 0.75㎥		초과 0.1㎥				
	수수료	인 상	수수료	인 상	수수료	인 상	
조정안	15,209	4,164 (37%)	1,062	290 (37%)	201	24 (13%)	처리비 제 외
현 행	11,045		772		177		

심의결과

(결과요지)

○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내용에는 전위원 동의

○ 수수료 인상 이후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립하여 주민홍보 수반 필요

○ 본 안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보다 소상한 자료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배부키로 하고 위원들께서는 내용을 재검토 후 서면으로 조정안 제출

○ 제출된 서면 내용에 따라 재소집 여부 결정키로 하고 폐회

(제안부서 조치할 사항)

○ 본 안건에 따른 세부자료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직접 배부 및 의견 취합하고 서면결정 또는 재소집 여부 결정하여 의결 요구하기 바람

울산광역시 중구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 원 장	결 재

일 시	'98. 4. 16(목) 14:00 ~ 15:20	심의방법	회 의	장 소	부구청장실

참석 상황	정 원	참 석	불 참	※배석 : 환경보호과장, 오수관리계장
	10	10	·	

안 건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안) 심의

발 언 자	내 용(요지)
○ 지역경제과장	성원보고(10명 모두 참석)
○ 위 원 장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개회 선언 o 물가지수, 여건, 전망과 대책 그리고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안)에 대하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내용 생략)
○ 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조 사항 전달 (내용 회의서류 참조)
○ 위 원 장	오늘 본 심의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자 등록부

성 명	소 속	직 위	서명(날인)	비 고
정재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산업국장		
이종호	〃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	문화공보실장		
김형복	〃	위 생 과 장		
오광근	울산중부경찰서	방범지도계장		
이창석	동울산세무서	부가가치2계장		
황광모	휴게음식업울산지회	사 무 장	黃光模	
배박용	음식업중앙회 울산중구지부	사 무 장		
김모주	복산동186-2 남운럭키1-1002	물가모니터	金某柱	
김원주	전국주부교실 울산광역지회	사무국장	김원주	
김재두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경제계장		

"신한 '98 육지연습 든든한 국가안보"

울 산 광 역 시

우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 전화(052)266-2743 / FAX 228-2099
환경미화과 과장 신교욱 청소시설계장 강한근 담당자 류석희

문서번호 환미 67512- 921
시행일자 1998. 8. 20.(년)
(경 유)
받 음 전구청장·군수
참 조 환경보호(위생)과장

선결	구청장		결재·공람	부시장	
접수	일자 시간	1998. 8. 21		국장	전결
	번호	18999 521		과장	
처리과				계장	
담당자					

제 목 과태료 부과기준 통보

1. 환미 67512-589('97. 12. 12)호와 관련입니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 및 환경부예규 제167호('97. 12. 4)"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3. 과태료의 부과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4. 구·군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부 예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적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97. 9. 18자로 전면 개정되어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개정된 내용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울 산 광 역 시 장

전 결 환경미화과장 신교욱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규정

제정 1994. 8.17 예규 제114호
개정 1995. 4.24 예규 제123호
개정 1995. 8. 8 예규 제126호
개정 1996. 2. 9 예규 제133호
개정 1996. 3.27 예규 제140호
개정 1996. 6.21 예규 제144호
개정 1996. 9.19 예규 제148호
개정 1997. 7. 2 예규 제156호
개정 1997. 7. 9 예규 제157호
개정 1997. 9. 1 예규 제159호
개정 1997. 12.4 예규 제167호
개정 1998. 6.12 예규 제17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시정을 하여야 하는 자동차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을 소명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등)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현장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2.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차를 하는 경우
3. 소음·진동규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4. 소음·진동규제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에 대한 규제
5. 별표 2중 자연환경보전법란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
6.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부과권자는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 구청장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 ·광역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 · 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994. 8.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예규) 환경부 예규 제63호, 제76호, 제81호, 제101호, 제102호, 제106호 및 제10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5. 4.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8. 8)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토양환경보전법란의 규정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예규)환경부 예규 제77호 및 제8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6. 2.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2의 과태료부과기준중 환경영향평가법 및 소음·진동규제법란의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6.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별표 2중 독도등 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란은 동법 시행규칙을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 · 징수와 관련된 환경관계법

1. 대기환경보전법
2. 수질환경보전법
3. 소음 · 진동규제법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5. 자연환경보전법
6. 환경영향평가법
7. 폐기물관리법
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9.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0.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1. 토양환경보전법
12. 먹는물관리법
1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14.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15. 수도법
16.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17. 호소수질관리법
18.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후)
	2. 수출이동서류의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	40	50
	3. 수입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동 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법 제12조제1항)	30	40	50
	4. 수입폐기물의 양도·양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3조제2항)	30	40	50
	5. 수입이동서류의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제1항)	30	40	50
	6.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포장·표지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법 제17조제1항)			
	○포장·표지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30	40	50
	○포장·표지부착등이 규격과 다른 경우	10	20	30
	7.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22조제1항)	30	40	50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5조)	50	70	100
	2.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법 제9조제2항, 제9조의제2항, 제10조제2항)	30	40	50
	3.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법 제12조, 제26조, 제33조제2항)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하는 경우	50	70	10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자	100	100	100
	4.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22조, 제27조)	100	100	1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후)
	5.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법 제13조제2항)	50	70	100
	6.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법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50	70	100
	7. 축산폐수저류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법 제33조제3항)	50	70	100
	8. 간이오수정화조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33조제1항)	50	70	100
	9. 특정공사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7조)	50	70	100
	10.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법 제24조제2항)	30	40	50
	11.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24조제4항, 제5조)	50	70	100
	12. 분뇨등관련영업 또는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과 관련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법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30	40	50
	13. 분뇨등 관련영업의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법 제35조제3항)	50	70	100
	14. 분뇨등관련영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35조의2제2항)	30	40	50
	15. 분뇨등관련영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 (법 제35조의3제1항)	50	70	100
	16.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38조제5항)	50	70	100
	17. 정화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39조제3항)	50	70	100
	18.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제2항)	30	40	5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후)
	19.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제3항)	50	70	100
	20.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제1항)	50	70	100
	21.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분뇨등 관련영업자로서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 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법 제44조)	30	40	50
	22. 분뇨등관련영업자, 설계·시공업자 또는 정화조제조업자로서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5조)	30	40	50
	23. 사업자,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분뇨등 관련영업자, 설계·시공업자, 정화조제조업자로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법 제46조제1항)	30	40	50
	24.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 폐수처리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3제2항)	20	30	50
토양환경보전법	1. 토지의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법 제8조제5항)	100	150	200
	2. 토양관련 전문기간으로부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검사, 누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제3항)	100	150	200
	3. 검사결과등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제4항)	50	100	200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13조제1항)	50	100	200
	5. 토양보전대책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 또는 특정유독물,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린 자(법 제21조제1항)	150	170	200

"I ♡ ULSAN (나는 울산을 사랑합니다)"

울 산 광 역 시

우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전화(052)266-2743/ 전송228-2099 /담당 김삼점

문서번호 환미 67000 -248
시행일자 1998. 2. 21. (5년)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환경보호(위생)과장

선결	구청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부구청장
	번호	3729(107)		국 장
처리과	환경보호과			과 장
담당자				계 장

제 목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 조정안 시달**

1. 중구 환보 67432-89('97. 8. 28), 남구 환보 67400-243('97. 9. 4), 동구 환보 67432-201('97. 9. 6), 북구 환위 67432-172('97. 9. 1), 울주군 환위 67432-427('97. 9. 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요청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조정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구.군별로 물가심의, 조례개정등 업무처리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업무보고 1부. 끝.

울 산 광 역 시 장

받는곳 : 더01-05

'98. 2.

업 무 보 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조정)

환 경 보 건 국

(환 경 미 화 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조장

▣ 현 황

○ 업체수 ┌ 분뇨수집운반업 : 7개(중구1, 남구1, 동구2, 북구2, 울주군1)
　　　　└ 정 화 조 청 소 업 : 8개(중구1, 남구1, 동구2, 북구2, 울주군2)

○ 최종수수료 개정일 : '91. 4. 23. (6년 10월 경과)

○ 수수료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 용역기관 :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 용역기간 : '97. 12. 13 ~ '98. 2. 16(65일간)
- 원가계산 용역결과(평균)

구 분		금 액	비 고
정화조청소	기본 0.75m³당	14,814원	
	추가 0.1m³당	1,031원	
분뇨수집운반	10ℓ당	112.90원	
	1ℓ당	11.29원.	

▣ 구.군별 원가계산 결과 내용

(단위 : 원)

구분 / 구.군별	정화조청소				분뇨수집운반(10ℓ당)	
	기본 0.75㎥당		초과 0.1㎥당		현 행	용역결과
	현 행	용역결과	현 행	용역결과		
구	11,045	15,209	772	1,062	98.33	112
울주군	9,604	13,232	658	906	78.89	112

※ 원가계산산정 주요내용

○ 유류비 및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등을 고려하여 산정

▣ 수수료 조정(안)

(단위 : 원)

구분		정화조청소		분뇨수집운반
		기본 0.75㎥당	초과 0.1㎥당	(18ℓ당)
현 행	구	11,045	772	177
	군	9,604	658	142
조 정	구	15,209	1,062	201
	군	13,232	906	201
인상금액	구	4,164	290	24
	군	3,628	248	59
인 상 율 (%)	구	37	37	13
	군	37	37	41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조정수수료는 처리비 제외된 것임.

◈ 사 유

- ㅇ 정화조청소수수료 : 구와 군으로 구분하여 조정
- ㅇ 분뇨수집운반수수료 : 구·군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조정

▣ 시 행 방 법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의하여 조정된(안)을 구·군에 시달하여 구·군별 해당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 의결후 시행

▣ 타시도와의 비교표

(단위 : 원)

구분 / 시·도·군별	분뇨(18ℓ당)	정화조		조정일
		기본 0.75㎥	초과 0.1㎥	
서울특별시	218	16,840	1,100	'92. 7. 1
부산광역시	360	16,200	1,170	'95. 1. 1
인천광역시	360	14,662	1,135	'96. 7.11
광주광역시	240	14,687	1,617	'97. 11.1
대구광역시	288	13,920	1,050	'96. 6. 1
대전광역시	214	9,670	1,167	'92. 9. 1
김 해 시	234	14,119	1,057	'96. 6.20
평 택 시	220	15,075	1,211	'95.12.23
용 인 시	242	17,140	1,263	'94. 12.1
평 균	264	14,701	1,197	
울산광역시(구)	**201**	**15,209**	**1,062**	**'98. 2**
부산시 기장군	356	16,038	1,158	'96. 1.18
충북 옥천군	142	8,150	960	'96.12.30
평 균	249	12,094	1,059	
울 주 군	**201**	**13,232**	**906**	**'98. 2**

울 산 광 역 시 청 위 촉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에 대 한

原 價 計 算 報 告 書

1998 년 2 월

社團法人 韓國應用統計研究院
Korea Institute of Applied Statistics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6
TEL:(02)784-9460(代) FAX:(02)783-8919

예정원가계산보고서

울산광역시장　　귀하

당 연구원에서는 귀 시에서 의뢰하신 하기 건에 대하여 원가계산 작성준칙에 의거 산출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건　　명	규　　격	단 위	수 거 요 금	비　　고
정화조 기본수거료	구청, 0.75㎥	원	15,209	
"	울주군, 0.75㎥	원	13,232	
정화조 초과수거료	구청, 0.1㎥	원	1,062	
"	울주군, 0.1㎥	원	906	
일반분뇨 기본수거료	울산광역시 전역, 10ℓ	원	112	
일반분뇨 초과수거료	1ℓ	원	11.20	

1998. 2

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일반분뇨수거료산출표

구 분	총 원 가	연간수거량 (ℓ)	ℓ당금액	적용비율	산출단가 (ℓ)	기본단가 (10 ℓ)
울산광역시 전 역	483,270,782	4,459,580	108.36	10.34	11.20	112

(일반분뇨)

구 분			금 액	비 고
용역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51,158,911	
		간접재료비	-	
		소계	51,158,911	
	노무비	직접노무비	252,137,173	
		간접노무비	-	
		소계	252,137,173	
	경비	복리후생비	3,425,040	
		제세공과금	4,744,831	
		여비교통통신비	1,388,612	
		보험료	18,253,802	
		감가상각비	29,890,284	
		수도광열비	-	
		지급임차료	2,049,400	
		수리수선비	-	
		지급수수료	6,477,949	
		도서인쇄비	66,605	
		자동차공과금	15,215,160	
		소계	81,511,683	
	계		384,807,767	
일반관리비 (5%)			19,240,386	
이윤 (10%)			35,288,922	
용역원가			439,337,075	
부가가치세 (10%)			43,933,707	
총원가			483,270,782	

정화조수거료산출표

구 분	총 원 가	연간수거량(㎥)	㎥당 금액	0.75㎥당 금액	현행수거료
구 청	1,292,617,717	63,741.70	20,279	15,209	11,045
울 주 군	265,005,886	15,021.30	17,642	13,232	9,604

용역원가계산서

(구청-정화조)

구분			금액	비고
용역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386,572,573	
		간접재료비	-	
		소계	386,572,573	
	노무비	직접노무비	393,269,046	
		간접노무비	-	
		소계	393,269,046	
	경비	목리후생비	4,947,280	
		제세공과금	15,944,557	
		여비교통통신비	7,693,569	
		보험료	26,153,700	
		감가상각비	107,851,206	
		수도광열비	4,775,701	
		지급임차료	-	
		수리수선비	54,919,711	
		지급수수료	10,710,964	
		도서인쇄비	3,404,116	
		자동차공과금	34,635,740	
		소계	271,036,544	
계			1,050,878,163	
일반관리비 (5%)			52,543,906	
이윤 (10%)			71,684,947	
용역원가			1,175,107,016	
부가가치세 (10%)			117,510,701	
총원가			1,292,617,717	

정화조추가수거료산출표

구 분	현행수거료	개정수거료	산 출 내 역
구 청	772	1,062	정화조추가수거료인상율 = {(개정수거료 − 현행수거료) ÷ 현행수거료} × 100 = {(15,209원 − 11,045원) ÷ 11,045원} × 100 = 37.61% 정화조추가수거료 산출 = 현행수거료 × 1.3761 = 772원 × 1.3761 = 1,062원
울 주 군	658	906	정화조추가수거료인상율 = {(개정수거료 − 현행수거료) ÷ 현행수거료} × 100 = {(13,232원 − 9,604원) ÷ 9,604원} × 100 = 37.77% 정화조추가수거료 산출 = 현행수거료 × 1.3777 = 658원 × 1.3777 = 906원

의 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5)

1. 의안명: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8. 12. 1.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98. 12. 4.

라. 위원회 심사 : '99. 11. 13.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가. 제안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97. 3. 7.)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97. 8. 11.),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97. 9. 18.)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규에 부합되게 전문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와 부합되게 전문개정.

○ 오수 분뇨 수수료에 있어서 기본 (0.75㎥) 11.045원에서 14,840원으로 초과(0.1㎥)할 때 마다 772원에 1.029원, 그리고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18L당 177원에서 198원으로 인상.

○ 가축사육 제한 지역 일부 조정

○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하여 환경부 예규에 준용

다. 근거법규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환경부 예규 제167호

4.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의 대부분은 상위 법규에 부합되게 전문을 개정하거나 용어 정리, 민원 불편해소 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개정조례안 제2조1항의 단서 조문인 "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부분은 법률상 분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했으며,

○ 동조3항의 조문중 "영업 구역을 분할하여"부분은 업체가 자율적인 경쟁으로 선정됨으로써 어느 구역이든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여 삭제했으며,

○ 동조 4항의 일부조문인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취소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한 업체의 독점사업을 견제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했음.

○ 개정조례안 제5조 2항의경우 현행안대로 하여 단서조항에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로 하여 청소에 관한 주도를 구청장이 갖도록 하여 투명성 있는 대행영업을 유도했으며

○ 제5조 3항의 경우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구체화를 시켜 주민들이 알기쉽게 오수 분뇨 처리 상황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안대로 두었음.

○ 또한, 오수분뇨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 시기에 주민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전면 재고려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내용:별첨)

수정가결 내용

○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수 정 전	수 정 후
제2조(분뇨 수집·운반의대행)①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수집 운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의하여 다른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취소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제2조(분뇨 수집·운반의대행)**①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제**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수집 운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의하여 다른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삭제**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개정안과 같음)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대행영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대상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후 즉시 징수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개정안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조등의 청소이행 명령 또는 통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수 정 전	수 정 후
제6조(오수정화시설등의 청소 요금)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이하"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소한 정화조청소업자는 별표2의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오수정화시설등의 청소 요금)**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이하"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소한 정화조청소업자는 별표1의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가축사육 제한지역등)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축산법 제2조에서규정하는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육【1마리이상의 사육(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은 별표3의 가축사육제한지역과 같다.	**제7조(가축사육 제한지역등)**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축산법 제2조에서규정하는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육【1마리이상의 사육(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은 별표2의 가축사육제한지역과 같다.
[별표 1] (개정안과 같음) [별표 2] (개정안과 같음)	[별표 1] (현행과 같음)
[별표 3] 1. 전부제한지역 (개정안과 같음) 2. 일부제한지역 (개정안과 같음)	[별표 2] 1. 전부제한지역 (개정안과 같음) 2. 일부제한지역 (개정안과 같음)